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안)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조리실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6차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1명	식생활관	○ 학교급식 업무 ○ 기타 학교급식 관련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 조건 및 보수

계약기간	인원	근로시간	보수
2026.05.01. ~ 정년까지 (만 60세) ※정년초과자: 2026.05.01. ~ 2027.02.28. (10개월)	1명	1일 8시간, 주 40시간 ※ 기숙사 3식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에 따른 수 당은 통상임금의 1.5 배 지급)	월급제 - 기본급: 월 2,144,500원 - 급식비: 월 160,000원 - 위험수당: 월 70,000원 - 특별근무수당: 월 50,000원 - 그 외 수당 별도 (근속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미 사용수당, 퇴직금 등) - 단,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 계산함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도교육청 처우 개선 관련 지침에 따라 예 산의 범위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정년초과자의 계약기간은 2026.5.1.~2027.2.28.(10개월)이며 기본급, 급식비, 주·휴일 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만 지급(임금 지급 시 각종 수당 제외/

2026.5.1.이후 채용시에도 계약기간은 2027.2.28.까지로 함.)

-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기준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 계약 해지 (정년초과자의 경우는 수습기간 미해당)

나. 복 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준용

다.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며, 개인 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지급, 각종 수당 별도

3.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제1항, 제18조(계약기간 및 정년) 제2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제16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검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18조(계약기간 및 정년) ②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설정한 시설관리원·미화원·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이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이다.
2.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이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 시험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초과자 포함]**
 -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자
- 마. 학교급식 경험자 및 경력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방법 및 일시

가. 서류 및 면접시험

- 1) 일시 : **응시원서 접수 후 개별안내** (※ 응시자는 면접시험 5분전까지 도착)
- 2) 장소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상담실
- 3) 대상 : 기한 내 서류 제출자
- 4) 채점기준(100점 만점)
 - 서류시험(30%) : 자격증(10~0점), 경력(10~0점), 거주지(10~0점)
 - 면접시험(7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응시원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6.4.27.(월)~채용시까지**
- 나. 접수기간 : **2026.4.27.(월)~채용시까지 09:00~16:00(근무시간 이내, 토·일요일 제외)**
- 다. 접수장소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 마. 제출서류(신분증 지참)
 - 1) 응시자 제출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표시 또는 삭제후 제출)

- 가) 응시원서 1부(사진 3.5cm×4.5cm 2매) [붙임 1]
- 나)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 지참)(해당자에 한함)
- 다) 조리실무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급식 경력증명서 : 교육행정기관, 학교
 -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실무사 이외의 경력(홀씨빙 등)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 경력인정: 조리실무사 주 15시간이상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라) 주민등록초본 1부(확인 후 반환, 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2)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 최종까지 주민등록 변동 내역 전체가 나와 있어야 함)
- 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 ※ 병·의원 등에서 건강검진 후 결과서 발급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건강검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다) 기본증명서 1부
- 라)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각 1부
-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 겸업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최종 합격자 결정

- 가. 일자 : **면접심사 당일 16:00 이후**
- 나. 방법 :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나. 서류 제출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다.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응시표” 는 면접시험일에 지참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라.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응시 희망자가 청구한 경우로 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5일전까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행정실(☎063-433-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2026년 4월 27일

한국기술부사관학교장

응시원서

		응시직종	조리실무사	칼라사진 3.5×4.5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漢字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현주소		(우:)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학력	학교명	재학기간	비고	
개인 정보 처리 동의	<p>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p> <p>②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경력사항, 자격, 최종학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최종합격자에 한함)</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채용응시원서 접수 후 10년 보관</p> <p>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p> <p>2026. . .</p> <p>응시자 : (인)</p> <p>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p>				

응시 직종	조리실무사	응시표		칼라사진 3.5×4.5cm
		2026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응시 번호		성명	2026. .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 또는 지원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 경력 :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해 기재)
 - 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원본 지참)
 - 개인정보 동의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 사진파일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교육공무직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우리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학교 팩스(063-433-5704) 또는 우편[(우 5542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상역로 96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행정실]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④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5월 2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행정실(☎ 063-433-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